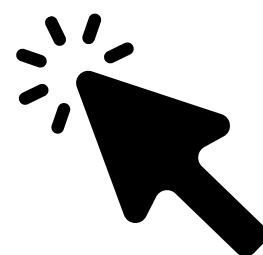


외부강의등의

사례금 수수 제한

및 신고 의무



더 알아보기

관련 법률

-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
- 공무원 행동강령

외부강의등 신고대상

- 직무 관련 또는 지위·직책상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외부강의등을 하고 사례금을 받는 경우

외부강의등 종류

- 교육·홍보·토론회·세미나·공청회
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
강의·강연·기고

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

- 시간당 40만 원(일 최대 60만 원)

외부강의등 신고기한

-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**10일 이내**에
기관장에게 신고

외부강의등 신고방법

- 서울행정시스템 감사 ⇒ 외부강의등
⇒ 사용자 ⇒ 외부강의등/초과사례금
신고목록 ⇒ 추가 ⇒ 내용입력 ⇒ 저장
⇒ 온나라 연계기안 (수신처:감사담당관)

신고위반 사례

- 공무원 A는 직무관련 협회의 요청에 따라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정책에 대해 외부강의를 하고 대가를 수령하였으나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음
- 도시건축국장이 특정 매체에 건축정책에 대해 기고하고 사례금 수수 기준을 초과하는 대가를 수령

“
청렴한 나,
청렴한 여수,
나부터 실천하겠습니다.

”

-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제한
및 신고의무 알아보기